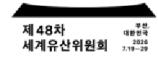




국토교통부

## 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알림

---

1.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(조합·협회)에 감사드립니다.
  
 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, 각 공제조합에서는 필요시 운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36248호, '26.4.7. 일부개정)
      - (주요 개정 내용) 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추가
      - ②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
  
   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국토교통부령 제1576호, '26.4.7. 일부개정)
      - (주요 개정 내용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
- 붙임 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개정문 1부.  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문 1부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수신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,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,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,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, 전국렌터카공제조합, 한국세무사회, 한국보험계리사회

주무관 **심지용** 지방행정사무관 **유윤희** 서기관 전결 2026. 4. 8. **백선영**

협조자

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-2881 (2026. 4. 8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, 정부세종청사 6동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873 팩스번호 044-201-5587 / [bommat50@korea.kr](mailto:bommat50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K-헤리티지 ,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